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02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예지
성일종 · 김승수 · 김상훈
강대식 · 윤상현 · 나경원
이종배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유휴농지 관리계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및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농지의 활용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휴농지의 복원·경작·매매·임대 등 공공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1조의4(유휴농지 관리계획 등)</u></p> <p>①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및 현황</u> 2.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농지의 활용 및 지원 방안</u> 3. <u>그 밖에 유휴농지의 복원·경작·매매·임대 등 공공활용에 관한 사항</u>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농업경</u></p>

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유희농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